

# 지역난방 공동주택 열요금 세대 분배방법 (참고용)

## (2023.07.01기준)

### 1. 급탕 열요금

가) 급탕단가(원/ton)는 순수하게 시수 가열 시 소요된 열량에 대한 비용이므로 세대 급탕온수 미터기의 검침유량을 근거로 급탕열요금을 부과하고 세대 수도 계량기의 검침유량에 합산하여 수도요금으로도 부과하여야 하며 기타 약품비, 동력비 등은 해당 관리비목으로 부과함

나) 급탕 공급온도 -세대 급탕 사용온도는 온수와 시수를 세면대에서 섞어 대부분 40℃ 전후로 사용 하는데 시수온도가 계절별로 다르므로 급탕 공급온도도 계절별로 **동계(10월~3월)에 55℃이하, 하계(4월~9월)에 50℃이하**로 운영하고 급탕배관 열손실을 줄여 세대부담을 완화함

### 2. 난방 사용열요금

가) 난방 열량계가 설치된 세대의 난방열요금 단가는 아래 표와 같이 책정 부과함.

**난방 열량계가 설치된 세대의 난방열요금** : 단위가 kWh일 경우(1 kWh ≙ 860 Kcal)

- 지역난방 사용요금(원/Mcal;부가세 포함) × 1.1(공동난방비<sup>1)</sup>) × 0.86Mcal/kWh

1) 공동난방비는 : 설비보온 상태(열손실), 난방 및 급탕 퇴수, 부대시설 사용, 계량기 고장 등 기계실에서 세대까지 난·급탕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10%내외)하는 총체적인 사항으로 공동주택 사용자의 설비운영 상태에 따라 달라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열손실과 기타 비용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사용량에 비례 또는 세대별 균등하게 공동난방비 항목으로 부과 운영도 가능함

나) 세대 난방계량기가 적산열량계가 아닌 유량계(단위 m³)가 설치된 경우 전체 열요금에서 급탕 사용요금,기본난방비,공동난방비를 뺀 금액을 세대 난방 검침유량 합계로 나누어 난방단가(원/ton)를 책정하여 부과함.

### 【계절별 세대 열요금 분배단가】

[2023. 07. 01 기준]

(단위:원, 부가세 포함)

계 절	지역난방 사용요금 (Mcal당)	세대난방 사용요금 (공동난방비 10%적용)		세대급탕 사용요금 (m³당)
		난방열량계가 KWh일 경우	난방열량계가 MWh일 경우	
동절기 (12월~익년2월)	118.778	112.36	112,360	8,012
춘추절기 (3~5월, 9~11월)	113.080	106.97	106,970	6,376
하절기 (6~8월)	101.761	96.27	92,270	5,801
연간 단일요금	115.423	109.19	109,190	상기적용

※ 상기 자료는 주택용 사용요금 단가로 산정된 금액이며

세대 급탕사용요금은 실증시험을 통해 얻은 자료이므로 사용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